

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를 위한

취업·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

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(이해충돌 방지 의무) 中

공직자는 재직 중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·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, 퇴직 후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

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(어진동)

세종포스트빌딩 6층 취업심사과

www.mpm.go.kr



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취업·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.

1 신고대상 공직자는 누구인가요?

- 공무원 및 **공직유관단체***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가 「공직자윤리법」 상 취업·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.
- 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·단체로 인사혁신처가 매반기마다 고시하고 있으며, 현재 총 1,227개('20.7.1.기준)의 공직유관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.

2 위반행위란 무엇인가요?

- **취업심사대상***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**취업심사대상기관***에 취업한 행위
-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**취급제한업무***를 처리한 행위 (본인이나 기관이 처리한 재정보조, 인·허가, 감사·감사, 조세부과, 계약, 감독, 사건수사 등의 업무 취급제한)
-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·알선하는 행위
-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을 청탁·알선하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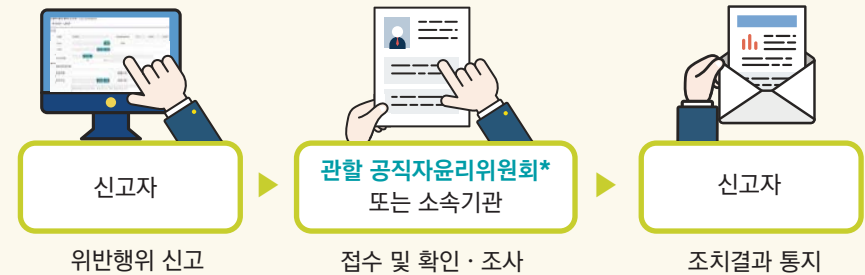
3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- 신고자 :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
- 인터넷 : **공직윤리시스템**, **인사혁신처** 홈페이지 **취업·행위제한 신고센터**를 통한 온라인 신고
- 우편신고 :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(어진동)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
- 상담전화 : 044-201-8180
* 신고내용은 「공직자윤리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

! 취업·행위제한 신고센터 인터넷 화면



4 신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

- 「공직자윤리법」 외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습니다.
-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5 위반 시 공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
- 「공직자윤리법」 상 위반행위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형벌·과태료 및 해임요구, 재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, 소속기관장은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.